

일시귀국 EPS근로자 자가격리시설 확인서 소지 필수 안내

1. 2020년 4월 1일 0시(한국시간) 한국 입국자는 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검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격리 대상자입니다.
 - 국내 거소지는 호텔, 고시원, 찜질방, 친구집, NGO나 외국인지원센터 쉼터 등이 될 수 없으며, **1인 1실이 가능한 본인 집, 회사 기숙사(사업주 동의시) 등만** 해당됩니다. 화장실, 식사장소는 공동 사용이 불가합니다.
 - 국내에 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입국자 방역강화가 해제될 때까지 입국을 연기해야 합니다.
2.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(E-9)는 한국행 항공편 탑승권을 발급 받으시려는 경우 “**자가격리 확인서**”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14일 자가격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3. EPS는 한-네 정부가 공동 실시하는 사업으로 “자가격리 확인서”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발급 가능합니다.
 - Step 1. 근로자는 한국에 자가 격리 가능한 장소를 마련하고, 휴가 중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락, 격리시설 및 14일 격리내용에 대한 동의 획득(사업주 미동의시 확인서 발급 불가)
 - Step 2. 네팔정부의 정책 (<http://epsnepal.gov.np/news>, '20.4.29)에 따라, 건강검진을 완료
 - Step 3. 검진결과서(영문)와 함께 (영문 또는 한글)신청서를 네팔정부(EPS Korea Section, Gwarko소재)에 제출
 - Step 4. 네팔정부는 신청 근로자들의 명단을 최소 출국일 7일전

까지 HRD Korea 네팔EPS센터에 공문으로 제출

- Step 5. HRD Korea 네팔EPS센터는 자가격리 시설 적합성 및 사업주 동의여부 확인
- Step 6. HRD Korea 네팔EPS센터는 확인서 발급자와 미발급자 홈페이지(<http://epsnepal.org/index.php>) 공고(출국 3일전)
- Step 7. 확인서 원본 배부 일자 및 장소는 홈페이지에 추후 공고 (예시 : 출국 전일 네팔EPS센터 또는 출국당일 공항 출국장)

4. 사업주 동의 및 자가격리시설 확인이 필요함에도 임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거짓, 오류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발급자는 한국으로 입국이 되지 않습니다.

- 입국일자, 시각, 이용편명이 변경된 근로자는 반드시 출국 2일전까지 센터로 통보하여 수정받아야 합니다.

5. 자가격리 규칙 위반시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, 강제출국, 비자취소, 한국 영구 입국 금지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6. 문 의 처

- 네팔정부(EPS Korea Section)

- 전 화 : 01-5186349, 01-5186350

- HRD Korea(네팔EPS센터)

- 방 문 : 월요일 ~ 금요일, 09:00~17:00 <Lockdown 기간중 방문 금지>

- 전 화 : 01-5520445

2020. 5. 8

HRD Korea 네팔EPS센터장